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8. 26 선고 2021가단135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3. 21. 접수 제190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양우진

별지1

목 록

1. 김포시 D 일야 621㎡
2. 김포시 E 대 192㎡. 끝.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등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하는 신용카드 회사이고, 소외 C은 원고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던 회원으로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원고에 대하여 카드대금 채무가 있던 자입니다. (갑 제1호증: 회원가입신청서) 피고는 소외 C과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03.20.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03.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 190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관계(피보전채권)

소외 C은 원고에게 신용카드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약정한 결제일에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7년 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2021.04.20.현재 연체된 카드이용대금 채무가 금 19,370,741원에 이릅니다. (갑 제3호증: 총괄잔액조회표)

이에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 차전 15650호로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동 확정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지급명령결정문 사본)

3. 소외 C과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

소외인의 최초 연체일은 2017년 부터로 위 집행권원으로 소외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찾던 중 현재에 이르러 2017년 03월 20일 피고와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외 C의 연체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동인의 '가족'으로 보여지는 피고도 이를 알면서 소외인의 재산 은닉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4. 결론

